

영등포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장순원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임경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 76호로 2019년 2월 15일 장순원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규정 구체화, 지방의회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등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 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위해서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 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 금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수수 제한과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영리행위 신고, 금전거래 및 경조사 통지의 제한, 성희롱 금지사항을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 마. 행동강령 조례 위반시의 조치사항을 규정(안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 바. 조례 위반행위시 신고·처리 등 행동강령 조례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제외하되, 공개모집 2회 이상에도 미달하는 경우는 2분의 1 미만으로 위축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 가능토록 하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활동의 청렴성 제고와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4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 본 제정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의회 스스로가 주민에게 청렴 의정을 서약하는 행위로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될 것이며, 영등포구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 하는데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고 보여지며,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는 상위 법령 위반이나, 조문의 형식, 내용 등에서 문제될 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